



## 심결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1. 5. 2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까르푸(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2001유거0250)	<p>한국까르푸(주)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해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상품의 거래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전제조건 또는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관련, 광고선전비, 판촉사원비용, 아르바이트비용, 행사지원금, 샘플비용, 판매장려금(Rebate), 행사매대사용료, 선물세트(Gift set)비용, 데코(DECO)비용, 재고조사비용 등 각종 명목의 비용부담을 강요,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하고, 납품업자에게 각종 명목의 비용을 합리적인 이유 또는 그 산출근거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강요하였으며, 납품업자로부터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하였고, 자기의 상품가격과 경쟁업체의 상품가격을 비교하여 광고하면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기의 모든 상품가격이 경쟁업체의 상품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 · 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4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 × 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시정조치일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li> <li>◎ 과징금 납부 : 500백만원</li> </ul>

2001. 5. 2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양우하이츠(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1 광고0139)	<p>양우하이츠(주)는 2000. 7. 6.부터 2000. 8. 26.까지의 기간 중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카탈로그 및 전단지를 통해 부천시 소사역 양우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동 아파트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초고속정보통신아파트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초고속정보통신아파트 1등급인증 앱블립(인증마크)을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마치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 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여 표시 · 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 × 1cm의 크기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li> </ul>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김영사의 부당한 광고 행위 및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1광고0045)	(주)김영사는 2000. 8. 22.부터 2000. 11. 10.까지의 기간 중 자신이 제조 · 판매하는 외국어 학습지 “김대군 토익”을 광고하면서 한국일보 등 6개 신문 등에 총 8회에 걸쳐 “..... 단숨에 200점 올리는 최고효율학습법”, “토익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받은 저자가 완성한 가장 완벽한 TOEIC 실전마무리!”, “TOEIC, 답이 보이는 VOCABULARY” 제목 밑에 “이 책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어휘나 표현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 과장 광고행위를 하였으며, 동기간 언론매체를 통해 외국어학습교재 TOEIC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에서 규정한 구입 후의 철회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폐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을 광고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표시 · 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3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광고행위 및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li> <li>◎ 과태료 납부 : 500천원</li> </ul>
(주)재능교육의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1광고0041)	(주)재능교육은 2000. 4.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조선일보 등 12개 신문, 전단지 및 TV방송 등에 총 792회의 광고를 통하여 아동용 학습교재 및 외국어 학습용 등 학습교재를 광고하면서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에서 규정한 구입 후의 철회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폐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을 광고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시 · 광고법 제4조제3항 위반	◎ 과태료 납부 : 12,500천원

2001. 6. 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동일산업(주) 등 광주전남 지역 14개 아스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1광사0363)	동일산업(주), 동양개발(주), 창원산업(주), (주)나평, (주)협성, 동인산업(주), (주)신라아스콘, (주)건양, 금성산업(주), (주)풍산, (주)대승산업, (주)신아금호, (주)창주산업, (주)대덕산업은 아스콘을 공동으로 판매할 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2000. 9월경부터 광주전남아스콘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매주 1회 정도 개최되는 사장단회의 및 영업팀장회의 등을 통해 같은 해 12. 19. 공동판매회사인 ‘광주건자재(주)’를 설립하고, 다음 날 광주 · 전남아스콘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광주지역에서 발행되는 2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li> </ul>



2001. 5.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민수아스콘 판매가격을 부가세 포함 관급단가에 비해 약 10%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2001. 1. 16. '광주건자재(주)' 사무실에서 합의사항을 위반, 공동판매회사와 협의 없이 아스콘을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업체는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하는 관급물량을 위반시점 이후 1년간 배정 받지 않기로 하는 '관급배정포기각서' 와 금 일억원을 배상토록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 표준계약서와 함께 '공증법인 호남합동별률사무소'에서 공증하는 등 광주권역의 민수용 아스콘 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위반	
롯데칠성음료(주)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1부사0177)	롯데칠성음료(주)는 자신의 대리점인 롯데델몬트 지옹유통(주)과 1993. 3월경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중 1999. 7. 22. 및 9. 6. 각각 「제품취급을 기피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업종 경고함」, 「9. 6~7 부산지점의 전 대리점 1대씩 주문토록 요청, PUSH에 만전을 기하라」는 등의 판매목표 부과 및 제품주문을 요청하였고, 대리점별로 자신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월 판매목표 부과 후 그 달성을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대리점 평가운영기준 및 상별기준」을 마련, 판매목표달성을 대리점 평가기준의 한 요소로 정해 평가점수가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송 또는 계약해지 및 재계약시 교체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6.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1단체0428)	(주)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주)의 서울여객지점 부장들은 1999. 1. 7. 서울 북창동 소재 일식집 '우전'에서 회합을 갖고 1999년도 가격운용과 관련하여 합의하고,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단체할인율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 과징금 납부 · (주) 대한항공 : 1,615,300천원 · 아시아나항공(주)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같은 해 8. 6. 상용포괄가격의 폐지 합의, JC특우회 행사 시 할인율 합의, 2001. 1. 1.부로 단체운임할인율 축소, 학생단체할인율을 폐지하는 등 자신들이 복점하고 있는 국내항공여객시장 단체운임의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 국내 항공여객운송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 위반	: 1,077,800천원
(주)베네시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1구사0425)	(주)베네시움은 2000. 1월 초부터 같은 해 3월 말까지 자신의 베네시움 상기분양을 위해 작성한 홍보자료에 "베네시움 자체주차장 200여대"라고 표현하고, 2000. 9. 25.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기간동안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5개 일간지(동아일보 및 중앙일보는 대구·경북 지역판)를 통해 총 26회에 걸쳐 게재한 자신의 인터베네시움 분양광고 문안에 「단, 4일만에 식당가 100% 완전분양!, 2,600만원(숙녀복매장기준)으로 년 1억3천만원을 번다, 분양 2일만에 의류상가 청약쇄도!(1층 숙녀복 완전매진)70% 돌파, 인터베네시움 1차분양 70% 계약완료」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대구지방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정읍시 중앙언론인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2000광사1597)	정읍시 중앙언론인협의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판촉행사 시 경품제공 및 2개월 이상 무가지 배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 서명을 받았으나 조선일보정읍지국이 위 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경품류를 제공하자, 2000. 9. 7. 정읍시 수성동 소재 한겨레식당에서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모임을 갖고 조선일보정읍지국을 회원에서 제명한 후,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신문기판업자가 조선일보정읍지국으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공동으로 신문공급을 거절하도록 하고, 2000. 10. 7.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월례 모임을 갖고 광고주 및 인쇄업자가 조선일보정읍지국에게 전단광고물의 배포를 위탁할 경우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들의 광고물 위탁을 공동으로 거절하게 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전라북도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군포회 및 (주)까치라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한 건(2001단체0357)	<p>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군포회는 2000. 11월경 회장 등 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본역 군체 식당에서 피신인 까치라인과 모임을 갖고 군포회 비회원이 부동산정보망 가입시 사전에 군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비회원들이 까치라인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까치라인은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군포회와의 구두계약을 체결, 군포회의 요구대로 비회원업소인 신산본부동산 대표 김철성외 10인의 가입신청에 대해 2001. 1. 4~5. 14. 현재까지 자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등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가입을 거절,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3호위반</p>	<p>◎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부동산관련 전문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1. 6.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캡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1유거0438)	<p>(주)캡스는 1999년 12월부터 달러영업정책을 도입하였으나, 고객 해약율이 예상보다 높자 달러와의 계약기간중 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모집한 고객이 1년 이내에 해약 할 경우 달러에게 지급한 달러지급액을 환수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달러지급액의 5% 상당액을 공제하여 적립하였고, 해약고객의 무인경비기자재를 철수하는 비용으로 무인경비 기자재가격의 50%를 달러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달러와 맺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